

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4.8.12>

자연재난 피해신고서

※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, 개인정보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------	-----	------

1. 피해자 정보

주소(사업장)				
성명(대표자)	(주민등록번호: -)			
가족 수	명(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)			
고등학생 수	()고등학교	명[비전문계 / 전문계]	()고등학교	명[비전문계 / 전문계]
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	은행명:	계좌번호:	예금주:	
연락처	전화번호:	휴대전화:	(통신사명:)	

2. 피해 내용

※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피해 발생 위치					
피해시설명	①	②	③	④	⑤
총면적(소유 + 임차)	①	②	③	④	⑤
면허·허가·등록 번호	①	②	③	④	⑤
피해물량	신고	①	②	③	④
	확정	①	②	③	④
피해 구분	①	②	③	④	⑤
피해 원인	①	②	③	④	⑤
용자신청 여부	[]	[]	[]	[]	[]
피해 발생 위치					
피해시설명	⑥	⑦	⑧	⑨	⑩
총면적(소유 + 임차)	⑥	⑦	⑧	⑨	⑩
면허·허가·등록 번호	⑥	⑦	⑧	⑨	⑩
피해물량	신고	⑥	⑦	⑧	⑨
	확정	⑥	⑦	⑧	⑨
피해 구분	⑥	⑦	⑧	⑨	⑩
피해 원인	⑥	⑦	⑧	⑨	⑩
용자신청 여부	[]	[]	[]	[]	[]

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

(서명 또는 인)

피해자와의 관계 [본인, 가족, 이장·통장, 이웃]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읍·면·동장) 귀하

유의사항

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,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

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(主) 생계수단 및 각종 지원혜택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피해자
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제3자 제공 · 활용 동의

-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(主) 생계수단 확인 및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으면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피해자

(서명 또는 인)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1조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,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,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공하여 주(主) 생계수단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주(主) 생계수단 확인에 필요한 소득수준,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피해자

(서명 또는 인)

-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재해구호법」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을 위한 자료로 배분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으면 「재해구호법」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피해자

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1. 피해신고 대상
 -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,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
2. 피해신고 제외 대상
 - 무허가(주택 제외)·비규격 시설 등 적법하지 않은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 피해(침수를 포함한다) 및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 가입자
3. []에는 해당 사항에 √ 표 하시기 바랍니다.
4.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/매몰/전파/반파/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.
5.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.

※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